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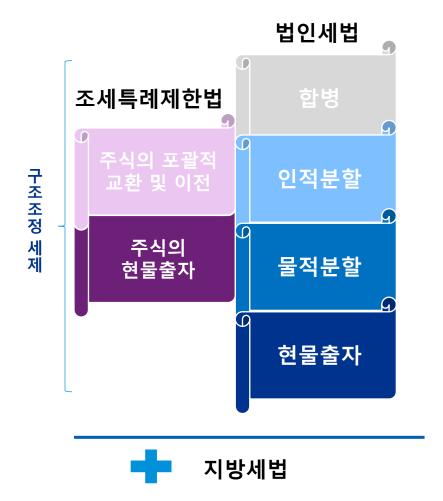
M&A 세제 개요 및 사례 검토

July 24, 2020



I. 구조조정 세제에 대한 개괄

세법에서 구조조정 세제의 구분 및 특징



특징

- 상법의 구분에 따라 규정
- 구조조정 세제는 구조조정시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 목적임
- 과세특례요건이 매우 세밀하여 실무사례와 배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차이

법령	목적	형태
법인세법	일반 구조조정	사업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지주회사 설립	주식양도

- 국세와 지방세 차이
- 100% 과세이연 vs. 일부 감면(50%,75%)
- 특례 요건 과세관청이 각자 판단



구조조정 과세체계의 접근방식

사업 양도

- 구조조정세제에서 구조조정은 <u>'사업'의 구조조정</u>이므로 구조조정 세제는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 식을 정하는 것임
- 법인세법에서 '사업의 양도' 는 일반 자산<u>의 양도</u>와 동일하게 접근함
- '사업의 양도' 는 통상적으로 사업에 대한 '영업권(premium)' 대가를 지급하는 것임
- → 예외적으로 물적분할(일부 현물출자)과 같이 사업의 양도 결과 100% 자회사가 설립되는 경우는 '영업권(premium)' 지급을 허용하지 않음(경제적 실질에 따른 규정)
- 구조조정세제에서 회계처리와 세무는 분리되어 있음

주주 변동

- 법인의 구조조정 결과 주주지분이 법인체가 다른 주주지분으로 변경될 때는 반드시 지분 양도차익이 발생되며(구주식과 신주식의 교환), 이 때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봄
- 구 주주의 지분 변동이 없는 구조조정도 있음(물적분할, 현물출자)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격 구조조정은 사업양도차익, 주주지분 양도차익이 "0"



구조조정의 과세방식



- 사업의 양도가 있었는가? Yes, 피합병법인 양도차익
- 양수받은 사업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승계(영업권 포함)
- 지분변동이 있는 주주가 있는가? 피합병법인 지분 양도



- 사업의 양도가 있었는가? Yes, 분할법인 양도차익
- 양수받은 사업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승계(영업권 포함)
- 지분변동이 있는 주주가 있는가? 분할법인 주식 감자



- 사업의 양도가 있었는가? No, 순자산의 이전
- 양수받은 사업의 취득가액은? 순자산의 시가(영업권 없음)
- 지분변동이 있는 주주가 있는가?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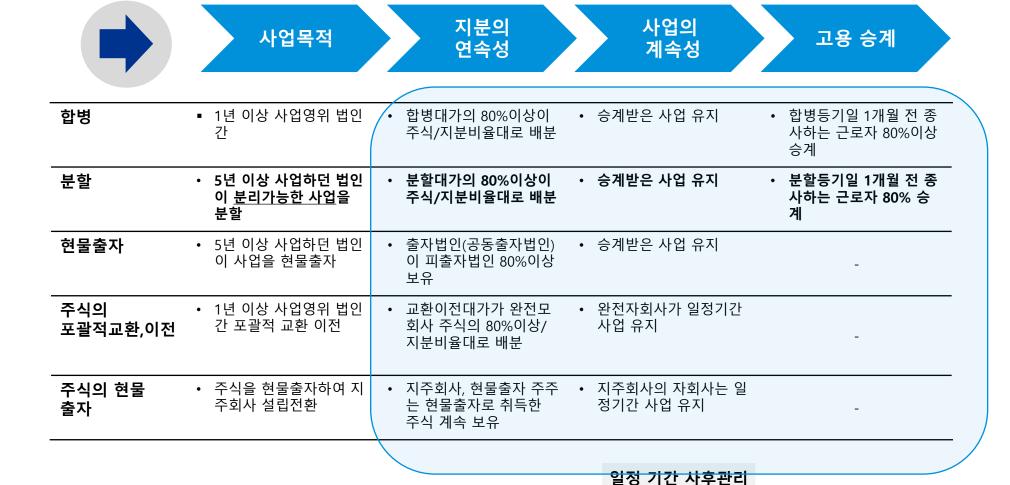
- 사업의 양도가 있었는가? Yes or No, 사업 or 순자산
- 양수받은 사업의 취득가액은? 순자산 또는 사업의 시가
- 지분변동이 있는 주주가 있는가? No

적격의 경우

- 양도차익 = 0
- 장부가액 승계
- 지분양도차익 = 0
- 양도차익 = 0
- 장부가액 승계
- 지분양도차익 = 0
- 양도차익이연(압축기장충당금)
- 시가 승계
- N/A
- 양도차익이연(압축기장충당금)
- 시가 승계
-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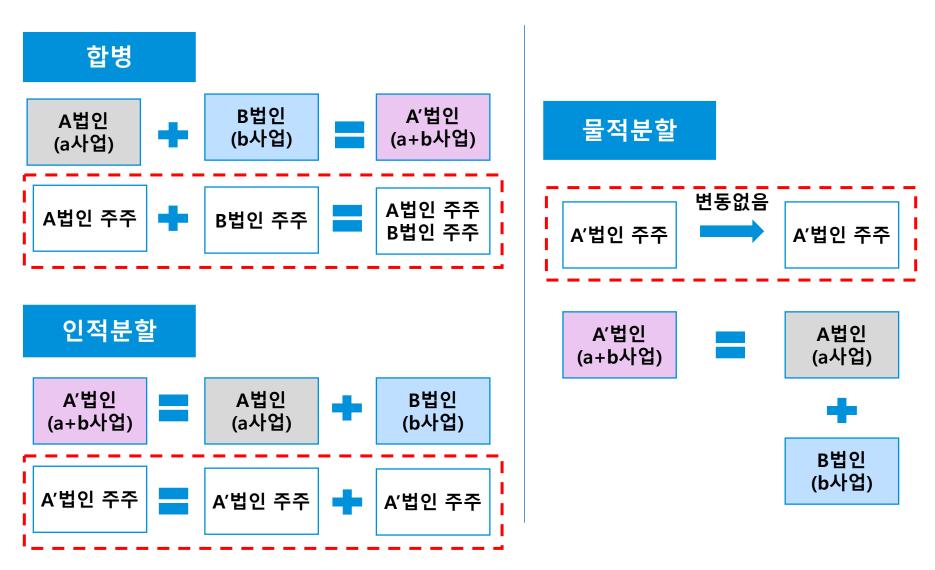


구조조정 과세특례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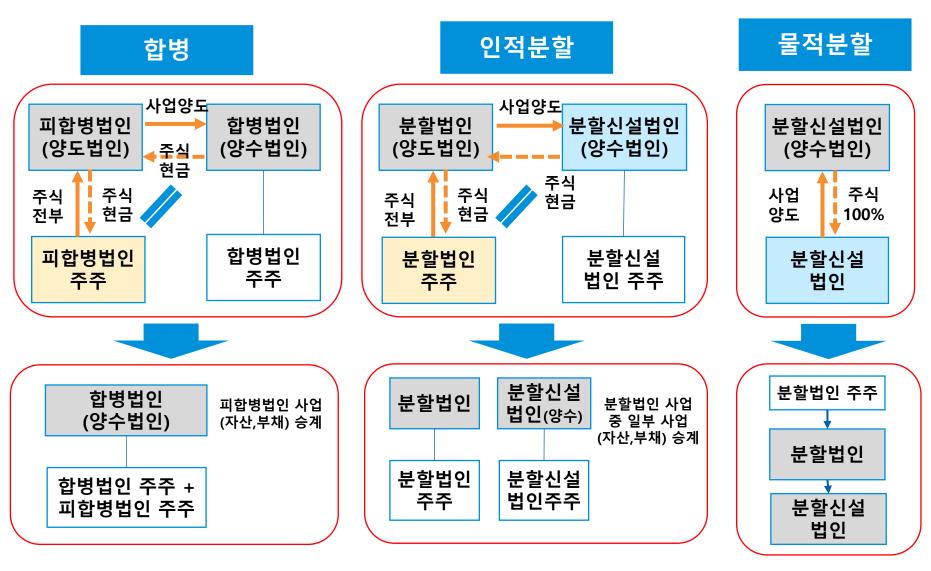


합병, 인적분할, 물적분할





구조조정 전, 후 비교(합병, 인적분할, 물적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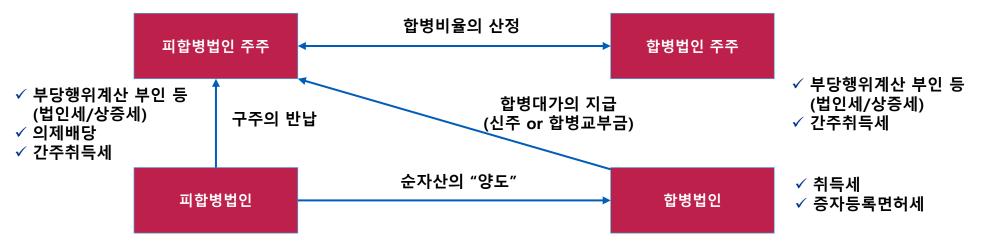






Ⅱ. 합병

합병 과세체계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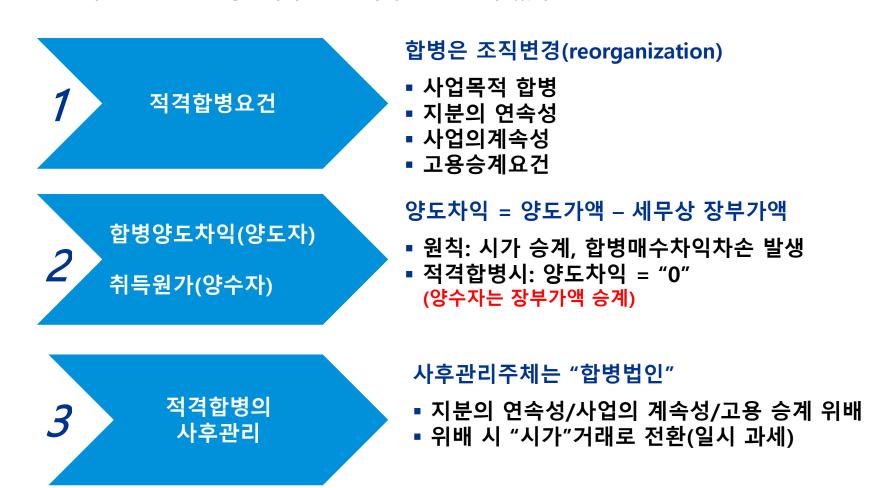
구분	비적격합병	적격합병
피합병법인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0.45%)	■ 양도차익 없음 ■ 증권거래세 비과세
합병법인	■ 합병매수차손익에 대한 손금(익금) 산입 ■ 시가 승계 ■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시가표준액 x 4%) ■ 신주발행에 따른 증자등록세(자본금의 0.48%, 3 배 중과세 검토 필요	 합병매수차손익 미인식 장부가 승계(과세이연 효과) 취득세 75% 감면(시가표준액 x 1%) 자산조정계정 신주발행에 따른 증자등록세
피합병법인의 주주	■ 의제배당 과세 ■ 간주취득세(요건 성립시)	■ 의제배당 비과세 ■ 간주취득세(요건 성립시)

✓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세 등의 이슈는 적격합병요건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합병 세제 주요 사항

합병은 조직변경으로 보아 양도거래임에도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적격합병 요건

사실상 경영주체 및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양도거래에도 불구하고 이익실현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에 따라 아래 요건(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이연 및 조세감면 가능

주체	내용
1. 사업의 목적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지분의 연속성 (주식교부비율요건)	■ <u>합병대가의 총합계액(시가) 중 주식 등의 가액(시가)이 80% 이상일 것</u> ■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을 각각 배정할 것: <u>주주 등이 지급받은</u> <u>합병교부주식 등의 총합계액 x 일정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u>
2. 지분의 연속성 (주식보유요건)	■ <u>주요 지배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u>
3. 사업의 계속성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 영위할 것 승계사업의 폐지: 승계한 고정자산의 ½이상을 처분하거나 미사용
4.고용 유지	■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0/10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사후관리요건은 적격합병의 철회의 의미보다, 적격합병의 유지를 위한 요건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예, 단계별 구조조정 수행 등)

구분	사유	
1. 사후관리요건	 적격합병요건 충족으로 과세이연 받은 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 보다 2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 발생시 과세특례 중단 -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지배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80/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3년 이내) 	
2. 사후관리요건 위배 효과	■ 자산조정계정 잔액 총 합계액(0보다 큰 경우): 일시 익금 환입(0보다 작은 경우에는 소멸) ■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중 기공제 금액: 전액 일시 익금 산입 ■ 합병매수차손익 일시 익금(손금) 산입 후,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 균등 손금(익금) 산입	

완전자회사의 합병특례

- 내국법인이 (1)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u>적격합병요</u> 건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음
- 적격합병요건과 무관하게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이월결손금, 세무조정사항 승계
- 사후관리요건 적용받지 아니함
 - 승계받은 사업폐지, 자산의 처분 등에도 적격합병 유지
 -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합병신주에 대한 지분유지 의무 없음



합병

Quiz: 합병 의사결정

사례내용

삼정법인은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주는 A법인(90%), B법인(10%)이 있다. A법인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을 영위하며 삼정법인과 합병하여 기업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한다. A법인은 합병 이후 고용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쟁점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A법인과 삼정법인을 합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Quiz: 합병 의사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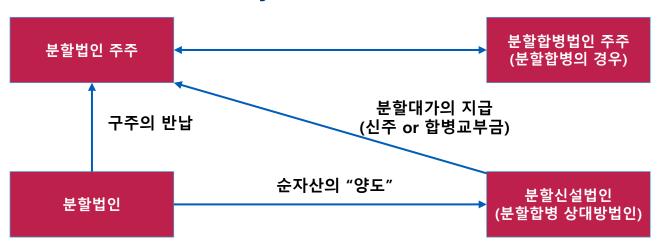
- A법인은 합병 이후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적격합병을 하더라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게 되어 적격합병의 혜택을 전부 추징당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A법인은 (1) 10%주주인 B법인으로부터 10%의 주식 전부를 매입하여 삼정법인을 A법인의 100% 완전 자회사로 만든 뒤 (2) 완전 자회사를 합병함으로써 사후관리요건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음





Ⅲ. 분할(인적분할)

인적분할 과세체계 Summary



구분	비적격분할	적격분할
분할법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0.45%) 부가세 과세(사업양도에 해당이 안될 경우) 	양도차익 없음증권거래세 비과세부가세 비과세
분할신설법인	 분할매수차손익에 대한 손금(익금) 산입 시가 승계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시가표준액 x 4%) 신주발행에 따른 증자등록세(자본금의 0.48%, 3 배 중과세 검토 필요 	■ 분할매수차손익 미인식 ■ 장부가 승계(과세이연 효과) ■ 취득세 75% 감면(시가표준액 x 1%) ■ 자산조정계정 ■ 신주발행에 따른 증자등록세
분할법인의 주주	 의제배당 과세 (분할로 취득한 주식가액 – 주주별 구주 취득가) 	■ 의제배당 비과세 (사후관리 위배시 과세X)



적격인적분할 요건

주체	내용		
1. 법인요건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분할일 것		
2.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일 것 다음의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함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자산총액 중 임대용 자산이 ½ 이상) 부동산 등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 중 80% 이상인 사업부문(단,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은 제외) 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단, 다음은 제외) 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이라도 다음은 사업부문 요건 충족(법령 제82조의2 제3항) 분할법인이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지배목적 보유주식: 지배주주 등 이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신설법인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지배주주로서 지분 등 승계 시에 한정) 		
3.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사업부문별로 직접 귀속되는 자산은 각 사업부문별로 귀속할 것 ✓ 공통사용하되 구분불가능한 자산 및 부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포괄승계 예외 가능 ✓ 승계대상 총 자산 및 총 부채의 각각 20%이하 미달승계 가능 ●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주식승계 불가능(포괄승계로 보지 아니함: 법령 제82조 제5항)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포괄 승계로 봄 ✓ 법령 제82조의2 제3항에 따라 승계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령상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위해 보유한 주식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령상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위해 보유한 주식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30% 이상 매출/매입하는 법인 주식(직전 3개년 평균) ✓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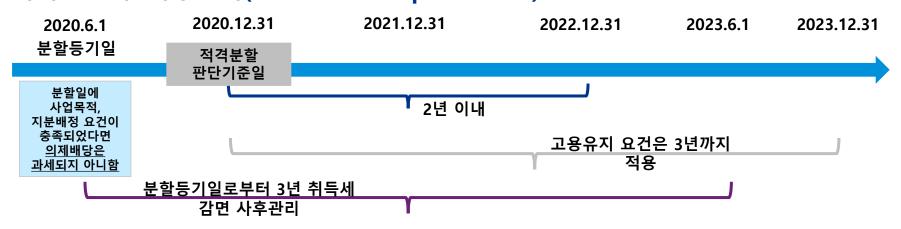


적격인적분할 요건

주체	내용
4. 분할법인만의 출자	■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5. 주식교부비율	■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으로 교부될 것
6. 주식배정	■ 분할대가가 기존 분할법인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7. 주식보유	 주요 지배주주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단, 부득이한 사유 시에는 제외
8. 사업의 계속성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 영위, 단 부득이한 사유시에는 제외
9. 고용유지	■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 자의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이고, 분할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단 부득이한 사유시에는 제외



적격분할 후 사후관리(Follow-on Requirements)



적격 분할 요건 충족

사업의 계속성 위반

-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
- 승계한 고정자산 가액의 50%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폐지로 간주함

지분의 연속성 위반

[물적분할] 분할법인이

-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증자 조세회피 고려, 2014개정)
- [인적분할]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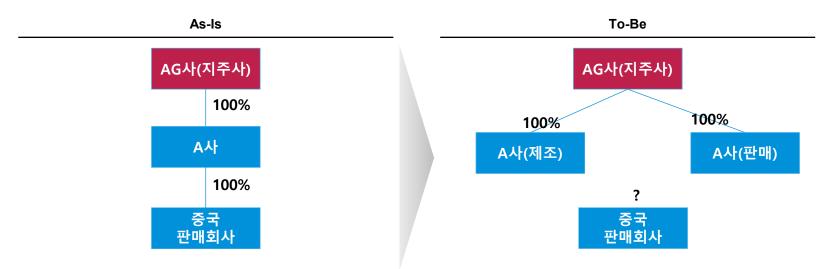
고용유지 위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80% 미만으로 하락

사후관리 요건 위배

- 물적분할법인: 압축기장충당금 전액 익금산입
- 인적분할법인: 자산조정계정 일시에 익금산입
- 물적/인적 분할 신설법인: 면제받은 취득세 추징, 승계된 세무조정의 추인





검토사항

사후관리요건	1. 언제 분할할 것인가?	
	2. 어떤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할 것인가?	
	3. (1)기능적 분할이 가능할 것인가? 즉, Value chain 중의 일부를 분할하여 사업으로 만들어도 적격분할로 볼 수 있는가? (2)사업지원조직은 함께 이전하여야 하는가?	
독립된 사업부문	4. 중국 판매회사 주식은 분할대상 자산으로 보아 이전이 가능한가?	
	5. 현금과 차입금은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특수관계자 거래(TP)	6. 판매/마케팅 부문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적격분할 후 사후관리(Follow-on Requirements)

- 착수 전 사업부문 carve-out 및 사업부문 valuation 수행
- 판매·마케팅 부문은 유동성 순자산이 대부분이며,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음
- 제조·연구 부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사후관리는 분할신설법인에서만 유지하면 되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더라도 분할법인의 주주는 과세되지 아니함

대안	제조·연구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판매·마케팅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Pros	■ 고용승계요건을 무리없이 충족 가능	 사후관리를 실패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에서 과세되는 금액이 작음 부동산(토지, 건물)을 이전하지 않음(행정비용 미발생)
Cons	 사후관리를 실패하였을 때 분할신설법인에서 과세되는 금액이 큼 	■ 영업·마케팅 인원은 turnover가 심하여 고용승계요건 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

1. 어떤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할 것인가?	판매·마케팅 사업부문(매각을 고려한다면 존속법인을 매각하여야 함)
2. 언제 분할할 것인가?	분할등기일을 12월31일로 결정 (적격분할 요건 유지 판단 기간 최소화, 사후관리기간 최소화)



기능적 사업분할(제조와 판매법인으로 분할) 가능 여부

■ 법인세법 제46조

-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후략)
-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011. 12. 31. 개정)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011. 12. 31. 신설)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1. 12. 31. 신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011. 12. 31. 신설)

3-(1) 제조와 판매 부문은 분할 전에는 하나의 사업부문으로 취급되었으며, 제조법인이 새로운 수주를 받기 전까지 판매법 인에게 전액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가?

-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게 전량 판매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을 보는 것임(서면법규-924, 2014.8.25.)
- 처분청은 쟁점분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사업부를 분할한 것은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에서 적격분할의 요건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분할사업 또는 분할재산만으로 별도로 물적 또는 인적 자원을 갖추어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실제 법문상 현재 사업부문의 존재여부가 아닌 향후 독립된 사업이가능한지 여부가 적격분할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보인다.(조심2014부2785, 2015.4.13)



기능적 사업분할(제조와 판매법인으로 분할) 가능 여부

3-(2) 인사, 총무,회계 등 사업지원조직은 이전하지 않고, 분할존속법인으로 부터 out sourcing받고자 함. 사업지원조직이 없어 분할존속법인에 의존해야 한다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사업지원조직(인사, 총무, 경리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 후 해당 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리스사업과 관련된 물적, 인적조직에 대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분리되어 분할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법인-25, 2012.1.9.)
- OCI 사례(조심2012지356, 2013.7.10.)에서는 분할존속법인으로부터 제조인력의 아웃소싱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용역을 위탁하지 않고서는 자체적으로 공장의 독립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보았음. <u>따라서</u> 사업지원조직의 아웃소싱과 사업기능조직의 아웃소싱은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성 있음
- 이후 OCI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대법2016두40986, 2018.6.28)에서는, 법에서 인력의 승계를 적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단, 2018.1.1.이후 분할분부터는 80% 요건 신설됨), 분할법인에 대한 업무위탁도 허용되는 것으로 판시함
-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과의 거래의존성을 이유로 적격분할을 부인하는 것 또한 법상 근거가 없음



자회사 주식은 분할대상 자산이 되는지 여부

- 4. 중국 판매회사 주식은 분할대상 자산으로 보아 이전이 가능한가?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제82조의2 ③,⑤)

- 원칙: 주식관련 사업부문은 분할할 수 없음
- 예외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은 사업으로 분할 가능**
- 예외2: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은 분할 가능
- 예외3: 다른 사업 이전 시 다음의 주식은 사업관련 자산으로 승계가능(적격분할)
- 1.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
- 2. 매출,매입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분할사업부문↔승계할 주식의 해당 법인)
- 3. 분할존속법인이 법령에 의한 지주회사인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 보유하는 주식(국내, 국외)
-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다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등
- *세분류상 동일사업 기준:
-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
- 매출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
- <u>분할사업부문과 관련된 주식으로서 승계가 가능한 주식을 미승계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 충족(서면-2018-법인-1036, 2018.12.13 외 다수</u>
- 검토 결과, 승계하지 아니함



현금과 차입금의 승계 여부

- 5. 현금과 차입금은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 현금을 제외한 자산/부채의 승계 여부는 결정이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분할비율 등을 맞추기 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현금을 결정하고자 하였음

- 현금은 별도 법령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조문 해석상 분할 시 포괄 승계 대상 자산에 해당되고, 임의로 승계하는 것은 risk 있음. 통상 현금은 공통자산으로 볼 수 있어 개별 귀속이 어려우므로 분할 시 승계하여야 하는 총자산가액의 20%범위를 초과하여 미달 승계하는 경우 문제제기 가능함
- 다만, 특정 사업부문에 한정되는 특정차입금 또는 유상증자 등이 있고, 당해 자금이 본래의 용도에 모두 사용되지 않은 경우라면 차입 또는 증자한 이후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현금은 해당 사업부문에 개별 귀속되는 현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우선 구분하고 잔여 현금만을 공통자산으로 보아 20% Rule 검토
- <u>그 외 매출채권의 회수, 대여금의 회수 등 분석적 검토를 통해 특히 분할 시점에 인접하여 우선적으로 식별가능한</u> 현금흐름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공통자산으로 보기 보다는 개별 귀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추정현금흐름을 통하여 정함(승계하는 총자산가액의 20% 범위 내)



적정 마진의 설정

6. 판매/마케팅 조직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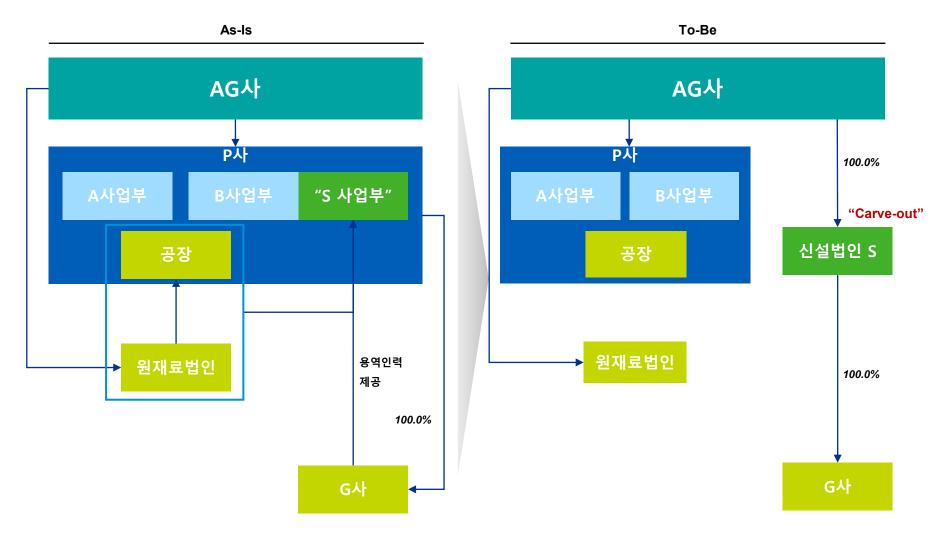
- 분석대상거래: A사(제조) -> A사(판매)으로의 완제품 납품
- 시가분석방법론: 거래순이익률방법
- 분석대상법인: A사(제조)
- ✓ 수행기능, 부담위험, 보유자산
- ✓ 경제적 분석(정량적, 정성적 기준 적용)
- 적정시가 권고: A사가 대상거래에서 적정 마진을 인식하도록 판매가격 설정
- ✓ 판매가격: (매출원가+판관비) x 적정 총원가가산율
- ✓ 적정 총원가가산율: xx% ~ zz%(중위값 yy%)
- 검토 후, 원가가산율 range 내에서 적정마진(xx~yy% 사이)을 결정함(거래 계약 별도 체결)





IV. 사업양수도 사례

Case study [S사-사업양수도]





[1] 검토사항

지배구조	1. 어떤 방법으로 사업부를 이전할 것인가? (물적분할 후 주식 이전, 별도 법인 설립 후 사업양도) *P사는 상장사여서, 인적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S의 주식을 다수에 부여하여야 하였기에 인적분할은 고려하지 아니함
시가	2.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므로 양수도 대상 자산에 대한 적정 시가 선정이 필요 ✓ 유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 ✓ 무형자산(영업권, 상표권) ✓ 기타 자산
과세 거래	 ✓ 사업양도 시 적정가액으로 분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과세관청이 판단할 경우 최대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 또는 과세 시도 가능성(상증법 제41조, 제42조) 3. 부가가치세 과세(포괄적 사업양수도 미해당),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2] 지배구조

(물적분할 후 주식 이전 vs. 별도 법인 설립 후 사업양도)

대안	물적분할 후 주식 이전	별도 법인 설립 후 사업양도(선택)
Pros	■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빠른 지배구조 변경 가능
Cons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물적분할 후 사후 관리 기간 소요 권리의무 이전비용 적게 소요(포괄승계) 	 세금 발생(양도소득,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가치세) 개별 자산, 부채 별로 권리이전절차 및 채무인수 비용소요



시가 거래의 필요성

- 1.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사업양도의 경우, 총 양수도 대가에서 각 자산별 세법상 시가를 공제한 잔액(초과지급액)이 당해 영업이 가지는 영업권,
 즉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라고 보게 됨
- 초과지급액은 (1)양도인 입장에서 양도소득 계산상 당연히 포함 (2)양수인 입장에서는 미래의 손금이 될 영업권의 취득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세무상 문제 발생
- 특히,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간에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
-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 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
- ✓ 영업권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유권해석: 국심2002부1600, 2003.0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7, 2006.05.12, 서면 2팀-2427, 2004.11.24.



시가 거래의 필요성

2-1. 상증법 –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구분	내용	근거규정
과세요건	(1) 증여를 받은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할 것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	상증법 제41조 제1항, 제2항
	(2)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과 일정한 거래(아래 ①~④거래)를 할 것 ① 재산이나 용역의 무상제공 ② 재산이나 용역을 저가양도하는 거래 ③ 재산이나 용역을 고가양도, 제공받는 거래 ④ 그 밖에 ①~③과 유사한 거래(채무면제, 현물출자 등) (3)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것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등
증여이익	[(시가-대가)-법인세상당액] x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시행령 제31조 제 6항

■ 경영주체를 교체시키는 "<u>사업양도" 거래와 매매목적물인 자산만 양도되는 "자산양도"는 목적, 형태, 법률효과가 달라 원</u> 친적으로 사업양도는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의 양도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 있음



시가 거래의 필요성

2-2. 상증법 - 제42조 제1항 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구분	·····································	근거규정
과세요건	(1) 자본을 변동시키는 거래나 소유주식의 지분율 혹은 지분가액을 변동시키 는 거래가 있을 것	집행기준 42-31의9-7
	(2) 자본변동 거래 등으로 이익을 얻는 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이익의 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일 것 - 해당 재산의 평가차액이 30% 또는 금액 3억 원 이상일 것	
증여이익	(1) 주식전환 등의 경우(분할 등) 분할 시 주식가액 - 분할대가 (2) 주식전환 외의 경우(사업양도 등) ①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x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 ② 주식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평가액 - 변동 전 평가액)	시행령 제31조의 9 제1항 4,5호

- 사업양도로 인하여 신설법인의 기업가치가 증가하고, 그 결과 주주의 지분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한 지분가치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음
- 제조사업부문을 포괄양도하면서 재고자산 중 일부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사안에서 양수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사례 있음(서울행정법원 2014.11.14 선고2014구합53896판결)



구분	내용	근거규정
시가의 적용 순서	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 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 1호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 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 ③ 상증세법상 평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 2호

계정	평가 방법	비고
<자산>		
현금	미이전	
유동자산	장부가액	
재고자산	재고가액 x (1+ tp rate)	적정마진 외부검토
<u>유형자산 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u>	<u>감정평가</u>	<u>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평균</u>
기타 유형자산	상증세법상 평가	기준내용연수 적용
<u> 무형자산 중 산업재산권, 상표권</u>	<u>감정평가</u>	<u>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평균</u>
<u>G사 지분증권</u>	상증세법상 평가	
<u>영업권</u>	<u>감정평가</u>	<u>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평균</u>
<부채>	장부가액	







kpmg.com/socialmedi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year] [legal member firm name], a [jurisdiction] [legal structure]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 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